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자료제공: 법무담당관실 ☎ 061-286-2624)

전라남도에서는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어떻게 이용하나요?

- 대 상** 전남도민 누구나
 - 상담내용**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전반
 - 신청방법**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https://law.jeonnam.go.kr>)에 신청
 - 상담방법** 신청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전라남도 무료 법률상담관* 이 서면, 사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 * 전남 도내 지역별(서부, 중부, 동부) 위촉 변호사
- 문의전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061-286-2624)

다른 기관 서비스는?

마을변호사 (법무부, 행안부)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문의
- 전남 155명 위촉(목포시 제외)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무부)

전화 및 방문상담
공단 누리집 사이버 상담
연락처: 국번없이 132

법률홈닥터 (법무부)

출장 방문상담
연락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무안) 061-285-1161

광주지방 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누리집 사이버 상담
연락처: 변호사 상담실
062-222-0420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은 고민도 크게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법무상식 2020년 10월 통권 제336호

www.jeonnam.go.kr

CONTENTS

I. 새로운 판례	6
1.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2.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8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10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12
II. 법령해석사례(법제처)	14
1. 대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2.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	19
3.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6개월마다”의 의미	22
4.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5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	31
6.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35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39
1. 제2019-355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39
2. 제2019-359호, 석유사업법 위반 과장금 12,054,000원 처분 취소청구	52
Ⅳ. 생활법률 상담사례(국방/병역의무자)	60
1. 국외여행허가와 절차	60
2.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제도	61
3. 국외여행허가(만 25세 이상 군미필자)	62
4. 입영연기(대학생)	63
5. 입영연기(재수생)	64
6. 입영예정자가 다친 경우	65
7. 병역처분 변경(해외 이주)	67
8. 성전환자의 방역	68
9. 중학교 중퇴자의 병역 감면	69
10.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70
11. 병역판정검사 절차	71
12. 7급 판정 - 재신체검사	72
Ⅴ. 법무단신	73
1.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 北협박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73
2.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74
3.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76
4. 세무사 사무장에 수뢰, 세무공무원 파면 정당	78
5. 상사 질책에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말했더라도	79
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80
7. 해외 출국한 여자친구 집 허락없이 들락날락… “주거침입 아니다”	82
8. ‘회사 민사소송 패소 직후 새 회사 분할 설립, 장비 옮겼더라도’	83
9.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85
10. 법무법인 “공표되지 않은 인가공증인 처벌기준은 부당” 소송냈지만	87

Ⅵ. 최근 개정 시행법령	89
1. 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89
2.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던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포함됩니다!!	91
3. 실종아동의 날 이 신설됩니다!!	92
4. 아동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가 강화됩니다!!	93
 Ⅶ. 최근 제정 · 개정 자치법규	 95
1.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95
2.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98
3.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101
 Ⅷ. 솔로몬의재판	 106
1. 단기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산정에 반영되나요?	106



-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7다218987, 218994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 35281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 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 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 총회에서 조합해산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방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된 것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원들 중 일부가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대법원 2020도805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이유와 경위,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기는 하였으나, 9년 동안 무활동 상태를 유지하였다가 2018. 9.경부터 다시 종교활동을 재개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5.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7. 12. 6.경까지 추후 입영 예정임을 전제로 중고등학교 복학예정,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연기신청을 하거나 병역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영 직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할 생각이었으나, 입영 바로 전날인 2018. 8. 12.에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입영을 거부한 후 종교 활동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기죄, 범인도피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두38112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 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 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체납자가 실제로는 홍콩 법인인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의 재산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 2016도1734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0조 제3항, 제12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제58조 제3호, 구 문화재수리법(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9호).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과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 이상을 포함한 기능자

6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이러한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 내지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인 피고인 회사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인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를 실제로 고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도록 피고인 회사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법령해석사례(법제처)

사례 1

민원인 - 뱅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뱅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각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뱅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구조의 차이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나 둘 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하는 용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용도임을 전제함.)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 대폐차(代廢車)(각주: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화물자동차법 제5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각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함.)



회 답

민원인은 뱅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은 운송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유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제4호)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의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5호를 말하며, 이하 “대폐차업무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폐차가 금지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뱅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간의 대폐차는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뱅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대폐차로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을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9호를 말하며, 이하 “공급기준고시”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단서)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통한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방지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폐차의 대상을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공급기준고시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신규 허가를 통한 증차가 가능한 경우 외에는 대폐차를 통한 증차가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급이 허용된 차량의 경우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대차해서는 안 되고 허가를 통해 공급이 허용된 차량으로만 대차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밴형 화물자동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공급기준고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서 신규 공급이 금지된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은 공급이 금지된 화물자동차 대수의 변경 없이 다만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율의 변경만 초래하는 것이어서 공급기준고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6. 4. 15. 2015도11040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이 금지된 밴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급기준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대폐차로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밴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가 공급이 금지된 화물차 간 교체라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급기준고시에 따라 신규 허가도 금지되므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는 결국 자연 감차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신규 허가를 통한 화물자동차 증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려는 공급기준고시의 취지를 벗어나는 해석일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 간 대폐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차령이 만료된 화물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수 있도록 하는 대폐차업무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2. (생략)

⑧ ~ ⑮ (생략)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량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량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생략)

③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최대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차

2. ~ 4. (생략)

②~④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사례 2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는 제외함.)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2824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2호에 단서로 신설(각주: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7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개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하여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중 해당 법령에서 따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인력에 대해 그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 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생략)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단서 생략)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2. 장비

(생략)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사례 3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질의요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6개월마다”의 의미를 6개월째 되는 달로 보아 7월까지 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로 보아 7월 1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보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면 되는지?



회 답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6개월마다”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유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2조제3항 본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기준의 하나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6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다”란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6개월마다”란 6개월에 한 번씩을 의미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6개월마다라고 규정한 것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의미는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기 전에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7월 1일까지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② (생 략)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⑦ (생 략)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제출방법과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4. (생략)

② ~ ⑤ (생략)

사례 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 (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참조.)

가.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행정질서별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 (각주: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1. 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발행)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가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를 추가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법규 및 과태료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 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 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를 규정(제13호)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가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관리주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를 추가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②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략)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 12. (생략)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 ⑥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 4. (생략)

⑤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 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 26. (생 략)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르는 자

④ (생 략)

공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생 략)

사례 5

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환경(각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구성하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5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폐율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준으로 그 개념상 건축물 외의 공간이나 경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목)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나목)을 각각 건축자산으로 규정하여, 독립적인 건축물 자체로서 건축자산인 것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인 건축자산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간환경의 구성요소인 일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하여 그 자체만을 건축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은 2017년 8월 9일 한옥등건축자산법이 법률 제1486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자 “건축자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각주: 2017. 3. 9. 의안번호 제2006095호로 발의된 한옥등건축자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자산인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건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3. (생략)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제47조·제58조·제59조

-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할 것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사례 6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경우, 그 사람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28 제1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가목)과 일정한 학력 또는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나목)을 인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등록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1호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기준에 따라 등록된 인력은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의 전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누30848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12. 2. 회신 19-052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법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하나의 업무에 등록된 사람은 오로지 그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각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면서도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그 사람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

·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3. (생 략)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2019-355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26.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OO면 OO리 *****번지(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동식물관련시설(돼지 축사)의 신축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2019. 6. 20.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9. 26.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26.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 1) 이 사건 신청지와 다른 신청지의 직선거리가 95m 이격하고 있는 본 건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할지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업 신청지가 동일인이 아닌 각각 다른

- 이상, 아예 처음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이 될 수 없는 곳인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불허사유 1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 2) 이 사건 신청지 축사시설의 경우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로 특정하여 당연히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불허사유 2도 타당성이 없다.
- 3) 같은 조건의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에 축사 허가를 단행한 사실에 비추어 상호간 논리모순 또는 평등 원칙 위배 등 위법부당이 있으며, 최첨단 현대식 시설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의 경우 법령상 저축사항이 없는 이상 마땅히 허가하여야 한다.
- 4) 진출입 시 1톤도 채 안 되는 트럭으로 도로 파손 및 영농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막연한 이유만 가지고 허가 신청권이나 행정청의 허가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5) OO호와 24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거리상이나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 때 본 건 허가가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반면에 OO호의 철새들에게 오히려 먹이 제공처가 되는 등의 플러스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등 이른바 결코 해를 끼치는 시설이 아니라 OO호의 생태계에 이로운 시설이다.
- 6) 분뇨의 정화시설을 통해 발생된 처리수는 악취저감수로 활용하고 돈사 세정용의 재활용수로 사용되게 되며 정화된 물은 외부로 방류자체가 되지 아니한 점과 나아가 수해상습지로 볼 수 없는 우량농지 시설지역이며 이미 하자 없음을 확인한 사항임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불허사유 6에 해당되지 않는다.
- 7) 건축 허가의 여부는 주민의 반대의견 여부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견이나 의회 의견 그 자체만으로 허가 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토양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본 건의 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8)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정주생활권을 보호하여 군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군정 방침이나 ‘지역민 간의 집단 갈등 및 반목현상 해소’라는 것은 추상적인 군정 방향 설정에 불과한 것들로서 군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가목(공통분야)의 경우 크게 4개 사항(적게는 10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라목(주변지역과의 관계) 또한 3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이유이다.

- 10) 이 사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변마을로부터 1.2km 떨어진 입지상 여건과 최신기술을 도입한 가장 현대식 ‘모범적 축사’로 설계된 설비상 여건 등을 갖춘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해당한다.
- 11) 피청구인의 종합적이고 난해한 보완요청에 대하여 모두 이행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원하는 수준의 허가신청 요건을 완비하였다.

나. 피청구인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에서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구별로 나누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우려와 무관한 단순히 농림지역 내 축산시설을 건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 4] 비고 제11의2에 의거 동일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와 다른 신청지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접한 필지이며, 건축주만 다를 뿐 토지소유자 및 신청시기가 같은 점, 각각 신청필지 양측으로 토지분할계획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아 동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제2호와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분야별 검토사항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같이 그 기준 및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법률요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됨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축사가 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림지역에 축사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국토가 훼손되면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국토에 대하여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3)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지(간척지)는 수도작 경작을 위한 우량농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최근 이 사건 신청지(간척지) 인근 우량농지에 돼지 축사 허가를 단행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상호간 논리 모순 또는 평등 원칙 위배 등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한번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 4)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로는 2차선 도로로 간척지 수도작 경작을 위한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해남군과 연결되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서 돼지 축사 건립 및 운영 시 대형차량 운행으로 농로파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가 건립될 경우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계속된 허가신청으로 연쇄적인 우량농지의 잠식이 예상되고, 축사 집단화로 인근지역의 영농활동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경리 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의 보전과 축산 폐수 등 환경오염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청구인 얻게 될 사익보다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 5) OO호 인근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 철새도래지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1·2등급의 권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가축사육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로 인해 오·폐수, 악취, 분진, 해충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그 주변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대기 등의 다양한 환경 영역의 오염원이 되고, 또한 OO군은 농업을 주된 경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해당하므로, OO호의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농작물의 생산력을 확대하는 것은 피청구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 과제이자 정책 방향이다.

- 6)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퇴비로 토양에 살포되면 그 토양을 직접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에 남아있던 유해성분이 강우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따라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신청지의 지형적인 요인(이 사건 신청지는 지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인근 OO호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뿐만 아니라, 사람이 축사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축산분뇨를 야적·방치하는 등 인위적인 요인도 수질·토질·대기질을 오염시키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첨단공법인 (주)***** CASEM 액비순환 및 방류시스템 방식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서 발생되는 분뇨 등을 과학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오·폐수 등 오염물질이 OO호의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7) 돼지 축사 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OO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9. 9. 17. 시행(지형도면 고시일) 돼지 축사의 경우 700m에서 2,000m로 생활환경권 정주권 보장을 위하여 사육 제한거리를 강화 시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가축사육 규정 강화에 나서자 학산면 돼지 축사 8건[축종 변경 2, 돼지 축사 신축 6] 44,743두, OO읍 돼지 축사 신축 5건 14,472두, OO면 돼지

축사 신축 2건 5,800두, 신북면 1건 2,160두, 도포면 3건 20,964두 인허가 접수 19건 85,139두가 개정 전 한꺼번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돼지 축사 건축인허가에 대하여 신청 건별 검토사항 중 개별법령 검토와 병행하여 돼지 축사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생활 환경권과 쾌적한 정주여건 보장과 관련하여 돼지 축사 건축 허가 시 OO군민에게 미치는 공익적인 손실부분까지 감안하여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에 대한 자문 등 의견을 반영하고자 「OO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OO군 대표 대의기관인 OO군 의회의 의견, 돼지 축사 건축 예정부지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자 해당 읍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돼지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수행코자 실시하였던 사항이다.

2019년 제11회 OO군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상정하여 심의결과 이 사건 신청 외 1건이 인접지역으로 동일 영향권으로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 민원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다.

- 8)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정주생활권을 보호하여 군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군정 방침은 추상적인 방향설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발전만을 도모하는 부분 아닌 군민, 환경, 발전 등이 모두 상생하는 OO군의 의미가 담긴 내용으로 결코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한다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여서는 안 된다.
- 9)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가목(공통 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이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 OO호 인근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 철새도래지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1·2등급의 권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있는 명백한 우량농지에(간척지) 해당되며, 또한 라목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 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이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정,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은 이유가 없다.

- 10) 청구인이 OO군 OO면 OO리 1***번지에 동식물관련시설(돼지 축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입지 및 설비 여건 등 충족하여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주변 환경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 요구하였던 사항이며,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비한 서류가 보완되었다는 내용이지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 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8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3) 「건축법」 제11조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8. 11. 12.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1***번지 7,49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돼지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해 2018. 12. 27. 청구인에게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 2)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에게 위 1)과 같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2.에 청구인에게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 3) 청구인은 2019. 6.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 위 치: OO군 OO면 OO리 1***번지
 - 대지면적: 7,495㎡
 - 연 면 적: 4,315.88㎡
 - 용 도: 동식물관련시설(돼지 축사)
- 4) 피청구인은 2019. 6. 21. 이 사건 신청에 대해 OO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원회는 주변마을 피해,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군정방침 상충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피청구인은 2019. 7. 9. OO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군의회는 주민 간 갈등, 악취·소음·수질악화 등 주민 직접 피해, 자연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 우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 6) 피청구인은 2019. 9. 5. OO군 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모두 부결하였다. [축종변경 2건, 신규 9건]
 - 악취 수질오염등 영향범위를 설정하여 저감 대책 수립
 - 집단화에 따른 악취 수질 환경오염 영향 큼
 - 군민의 삶의 질 우선한다는 군정철학과 상충 됨
 - 대규모 돼지 축사 건축으로 인한 집단 민원 해결 선행
- 7)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한다.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농지 집단화가 크고, 이 사건 신청지는 간척지에 위치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우량농지이며,
- 8) 이 사건 신청지 240미터 인근에 철새도래지 OO호가 위치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장차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 2등급 권역이다.
9) 피청구인은 2019. 9. 26. 청구인에게 다음의 이유를 들어 건축 불허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 불허가처분 통보

건축 불허가 사유

1.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으로 7500㎡미만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상필지는 7500㎡미만으로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자 2건으로 분리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주만 다를 뿐 토지 소유자가 같고 신청시기가 같은 점으로 보아 동일 사업장임을 감안 주변에 미칠 환경적 영향 등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됨
2.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중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 또는 농지계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3. 또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농지 집단화가 크고 해당농지가 대규모 돈사로 전용되었을 때 인근 농지의 연쇄적 농지전용등 우량농지 잠식 우려
4. 사업대상 간척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우량농지이며, 대규모 돈사 건립시 대형차량 출입으로 농로파손 및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의 집단 민원 예상됨
5. 사업대상지 240미터 인근에 철새도래지 00호가 위치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장차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임.
6. 또한 사업대상지는 상수침수지역으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우 발생시 침수로 인한 축산폐수 유출로 00호 수질오염 및 인근 우량농지 토양오염 우려
7. 돈사설치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생활환경권, 쾌적한 정주여건 보장 관련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00군 의회, 신청소재지 읍면주민의 의견청취, 00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토양,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의 생존권 막대한 피해에 따른 반대의견 및 불허가 의견 제출
8.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정주생활권 보호하여 군민 삶의 질 보장한다는 군정방침과 상충되는 등 대규모 돈사건축으로 지역민간의 집단 갈등 및 반목 현상 해소
9.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가목, 라목의 규정에 부적합 함. 끝.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이다.

2) 관계 규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 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라. 주변지역 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정,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3) 판 단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여부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다. 이때 재량권 행사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

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지 및 그 주변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고,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는 간척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우량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240미터 인근에 철새도래지 OO호가 위치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장차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 2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을 고려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처분 절차에 하자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제2019-359호,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2,054,000원 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2,054,000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1.부터 OO군 OO읍 OO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검사2팀은 2019. 8. 30. 14:30경 (주)유일 공장 내에서 청구인의 직원 김○○이 이동 판매 차량(95소9451)을 이용하여 용달차(**더*****)에 경유를 공급하는 것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1. 청구인에게 관계 법령의 감경 규정에 따라 1/2을 감경한 12,054,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2,054,000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 1) 청구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OO군 OO읍 OO공단에 위치

한 (주)** 공장 안에 트랜스포터(전남**바****) 차량에 연료를 주입한 후 공장 입구에서 연료가 없어 운행이 불가능한 같은 회사 소속인 (유)**** 용달차(**터****)에 3~4리터 정도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검사 2팀에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 2) 사건 당시 청구인의 업소 직원은 거래처인 (주)****로부터 트랜스포터(TP) 차량의 주유를 주문받고, OO산단 내 (주)** 1공장으로 가서 이동 주유 차량으로 트랜스포터 차량에 주유(경유 676리터)하였다.

주유가 끝난 후, 거래처 직원은 트랜스포터 차량이 공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호위 차량이 기름이 떨어져 시동을 걸 수 없어 공장 진입로를 막고 있으니, 가까운 주유소를 갈 연료만이라도 주유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청구인의 직원은 오랜 거래처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더구나 전국적인 조선업 침체로 OO OO공단의 많은 조선업 관련 업체가 폐업하여 거래처도 줄고, 매출액도 급감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 영업하고 있는 거래처인 (주)****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주유 장소인 (주)** 1공장은 조선 관련 블록을 제작하는 공장으로서, 사건 당시 거대한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 차량을 빨리 현장에서 이동하여야 다른 차량이 들어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3)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장의 적발 통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 사건은 청구인의 고의적인 의도가 아닌 거래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극소량(3~4리터)을 주유해서 발생한 것으로, 위반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12,054,000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사건 당일 용달차의 주유 거래 기록은 없음)

- 4) 청구인은 2006. 3. 1. 개업 이후로 위법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이 영업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은 조선업 불경기로 세금도 못 낼 정도로 영업 사정이 좋지 않아 청구인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다.

청구인의 업소 매출액은 2013년도 29억여 원에서 2018년도에는 16억여 원으로 급감하여, 대출금 2억7천여만 원 상환과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과 가족은 경제적

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 5) 이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니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 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 1)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적발 통보를 받고, 행정절차에 앞서 위법 행위 사항 등 적발 당시의 상황과 의견을 듣기 위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이 가능함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19. 9. 25. 제출한 의견서와 적발 당시 청구인 업소의 직원이 서명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거래처인 (유)*****에서 용달차 이동이 필요해 주유 요구를 받아 이동 판매 차량으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으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2)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영업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서는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주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동 판매 차량(**소****)으로 용달차(**더****)에 직접 주유 공급하였다.
- 3) 청구인은 다년간 석유판매업을 운영해 왔으므로, 석유사업법에서 위반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경기 악화, 처음 위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최소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이 사건 처분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법한 처분이며,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6조 [별표 1], 제17조 [별표 2]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06. 3. 1.부터 OO군 OO읍 OO로 308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검사2팀은 2019. 8. 30. 14:30경 (주)유일 공장 내에서 청구인의 직원이 이동 판매 차량(**소****)을 이용하여 용달차(**더****)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 3)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장은 2019. 9. 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석유 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 적합
 -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결과 : 부적합주)
 주) ***주유소는 이동판매차량 주유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석유제품(경유)를 주유 판매하였기에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임
- 4)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의견 제출)”하였다.
 - 위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 위반)
 - 처분내용 : 사업 정지 1개월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 5) 청구인은 2019. 9.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직원은 거래처 (유)****로부터 연료 배달 주문을 받고 이동 주유 차량으로 OO공단 내 유일 1공장에서 (유)****의 트랜스포터(TP 전남**바****)차량에 주유를 하던 중, (유)****의 직원이 TP차량을 호위하던 용달차 (**더****)에 기름이 없어서 멈춰서 있다면서 TP차량이 이동해야 하니 주유를 요청하였음
 - 오랜 거래처(2008년부터 거래)의 부탁으로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용달차를 빼지 않고서는 트랜스포터(TP)차량이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없어 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석유공사 직원은 배달장소 1km 전부터 이동 차량을 따라와 적발하였음
- 6) 피청구인은 2019. 10. 10. 내부결재를 통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당초 24,106,993원에서 1/2 감경한 12,054,000원으로 산정하였다.
- 24,106,993원 = 사업정지 일수(30일)*위반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 (4,464,258원)*0.18
 - 주무과 의견 : 위반 행위자가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고 위반의 내용, 처음 위반한 사실 및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금액 24,106,993원에서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 12,054,000원 부과함이 타당

행정처분 기준(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가. 일반기준

-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사업정지 일수} \times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 \times 0.18$
--

- 3) 2)의 사업 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를 말한다.
- 4) 1일 평균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7) 피청구인은 2019. 10. 21.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2,05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행정처분 내용

업소명	주소	위반내용	행 정 처 분	
			처분내용	산출근거
○○○주유소 (김○○)	○○군 ○○읍 ○○로 308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 위반청소년에게 주류제공	과징금 (12,054,000원)	(1일 평균 매출액*30일 *0.18)*1/2 ※1일 평균 매출액 4,464,258원

- 8) 청구인은 2019. 11. 11.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2019. 11. 12.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청구하였으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4.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 9) ○○경찰서장은 2019. 1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 (청구인)은 법인 대표자로 종업원에 대한 주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 김○○(청구인의 직원)은 기소 의견, 2019. 12. 6.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사건 송치
- 1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은 2019. 12. 3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직원 김○○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 1)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4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제1항은 주유소에서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 판매할 경우 이동 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다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등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개별기준 라목 15)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차 위반한 때에는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1. 가목 일반기준 2)는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사업정지 일수에 위반 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과 0.18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별표 1] 1. 일반기준 라목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판 98두 11779, 대판 2004두3854).

- 3) 살피건대,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심판 청구서, 의견제출서 등을 통해 청구인의 직원 김○○이 「석유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과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106,993원 부과처분을 1/2을 감경한 과징금 12,054,0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① 13년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일 청구인의 직원 김○○은 이동 판매 차량으로 (유)○○특수의 트랜스포터 차량에 적법하게 주유를 하는 도중, (유)○○특수의 직원이 트랜스포터의 호위 차량인 용달차에 연료가 떨어져 트랜스포터 차량을 호위하여 나갈 수 없으니 주유소에 갈 연료만 주유해 달라고 긴급히 요청하여, 오랜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당시 현장 여건상 트랜스포터 차량이 나가야 작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어떠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④ 경기 침체 속에서 대출금 2억 7천여만 원 상환과 2명의 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서 어렵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석유판매업자의 행위 금지사항 준수를 통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올해 26세로 국외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외여행허가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5세 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외여행허가

- ☞ 25세 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 만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등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절차

- ☞ 허가신청방법은 방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국외여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바로 허가처리 되고,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 중에 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할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에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이 보장되며 국가에서 항공료 등 여비가 지급됩니다.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란?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입영희망자에 대한 혜택

- ☞ 입영희망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 ☞ 정기휴가를 이용한 연 1회 이상 국외여행이 보장되며 영주권 국가로 출국할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인의 특성, 능력, 희망을 반영해 보직과 부대를 배치받습니다.

◇ 신청절차

☞ 입영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입력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23세의 대학생입니다. 올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병역의무자가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유학이 가능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국외체재 증명서류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입영연기가 됩니다.

◇ 국외체재자·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외국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받음).



현재 22살의 대학생입니다. 집으로 입영통지서가 왔는데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언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나요?



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는 대학과 병무청 간에 행정적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아래기간까지 연기됩니다.

- ① 2년제: 22세
3년제: 23세(학위심화과정은 24세)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의·치·한의대: 27세
- ② 석사과정: 26세(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 초과 과정은 27세)
- ③ 의·치·한의대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28세
- ④ 박사과정: 28세
- ⑤ 사법연수원: 26세

◇ 학교별 연령의 제한

-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일정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 자동입영 연기

- ☞ 재학생입영연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이 학적보유자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일정연령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 입영 등이 연기된 대학생이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재학생입영 신청을 한 자로서, 재학생입영신청을 취소하거나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재학생 입영연기의 제한

- ☞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가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연기가 제한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나 삼수를 하여 수능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재수생 또는 삼수생의 입영연기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수생의 경우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가 되며, 이에 더하여 삼수로 인해 한 번 더 연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능시험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생년월일이 빨라 학교에 일찍 입학한 사람은 4수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함).

◇ 입영 기일의 연기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 진학(고등학교 진학·복학 예정자 포함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절차

☞ 재수생의 경우

입영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영연기신청은 늦어도 입영일 5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입영기일연기원)

☞ 삼수생의 경우

재수 후에 삼수를 하려는 사람은 수능시험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재수 또는 삼수로 입영기일을 연기한 후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 졸업 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 예정 중인데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없나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병역처분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게 된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 제외),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 제외),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으로 군에서 복무중인 사람 제외)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 제외)으로서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 ①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소집해제 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된 자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현역병(상병)으로 복무 중입니다. 가족이 이민 신청을 하여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제대할때까지 군복무를 계속해야 하나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현역병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됩니다.

◇ 변경 절차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위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현역병(② ~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이하일 것) 및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처분변경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합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 ②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④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2.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학력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감면 받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중학 중퇴 이하자의 전시근로역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학력이 중학 중퇴 이하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감면자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중병을 앓아 현재 키가 매우 작습니다. 신장(cm)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은 체중에 관계없이 6급(면제) 판정을 받으며, 141 ~ 145cm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5급(전시근로역)의 판정을 받습니다. 161cm 이상 ~ 203cm 이하인 사람은 BMI단위(체중kg/신장m×신장m)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신체등급 판정기준

- ☞ 신체등급 판정은 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②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합니다.
- ☞ 신체등급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신장과 체중에 따라 BMI(체중kg/신장m×신장m)지수를 산정하여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 ☞ 반면,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 ☞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 ☞ 신체등급이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 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작성 및 병역처분기준 등 교육 안내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간염검사 → 소변검사 → 신장·체중 측정 → 시력측정 → 혈압측정 → 내과·외과 등 각 과목별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 신체 등급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 교부 → 귀가

◇ 병역판정검사의 과정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심리검사는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 신체검사 순서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 및 치과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19세의 청년입니다. 어릴 적 간염을 앓아온 관계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신체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7급 판정자에게는 일정한 치유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신체검사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별도로 보내 줍니다.

재신체검사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질병에 대하여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 신체등급 7급의 재신체검사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 ①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②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법무
단신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 北협박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북한 보위부로부터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당하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79).

북한에서 태어난 A씨는 2011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해 남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부터 북한 보위부 측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A씨는 수년 간 탈북민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적어 북한 측에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A씨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보위부원과 월북 계획을 논의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월북 자금을 마련한 A씨는 중국까지 갔다가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자 다시 마음을 바꿔 한국으로 돌아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지식 정도, 북한으로 탈출 예비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A씨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189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

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센티브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의 당시 조합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익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조합 임원들이 받게될 인센티브가 그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다른 심리 없이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모공원 근처에 화장장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낸 제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343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양평에서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추모공원 근처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양평군에 제안했다. A추모공원이 설치하려는 화장장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약 150m 거리에는 군인아파트가, 약 36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다. 양평군은 해당 부지가 주도심권과 2~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과 군인아파트 등이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추모공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해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추모공원 측이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평군이 공원 측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양평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며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추모공원 측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 사무장에 수뢰... 세무공무원 파면 정당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32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공무원인 A씨는 2019년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B씨에게 납세자 과세정보 관련 조회를 해주면서 2년간 36회에 걸쳐 농산물과 성접대 등 7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1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씨의 비위 혐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파면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매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의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사 질책에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말했더라도

상사의 질책에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라도 일을 계속 했다면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545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제과·제빵업체인 I사의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입사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I사 대표의 아들이자 실질적으로 I사를 운영하고 있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19년 5월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라고 말한 뒤 제빵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에게 다시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의 첫번째 질책에 대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서 한 발언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움에도 B씨는 다시 A씨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이는 A씨가 짐을 챙겨 I사를 떠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씨의 의사에 반해 I사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A씨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와 I사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판시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54).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안돼

한편 김씨는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2심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김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9년 6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6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소급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2개월 원심 확정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했다”면서도 “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외 출국한 여자친구 집 허락없이 들락날락... “주거침입 아니다”

해외로 출국한 여자친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347).

A씨는 2019년 4월 B씨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매일처럼 B씨의 집을 드나든 A씨는 B씨가 같은해 5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총 8회에 걸쳐 B씨의 집에 출입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연락을 주고받다 다툼이 생겼고, B씨는 미국에 있던 중 자신의 집을 관리하던 C씨로부터 A씨의 출입 사실을 알고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A씨의 출입행위가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당시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고, 이전에도 B씨의 묵인 아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없는 때에도 집을 출입했다”며 “A씨가 8회에 걸쳐 B씨의 집에 출입할 때까지 A씨와 B씨의 이러한 관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말 다툼한 것을 계기로 헤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출입행위는 A씨와 B씨의 관계 악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B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A씨의 출입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출국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다”며 “설령 B씨가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가 출국기간 동안 A씨의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회사 민사소송 패소 직후 새 회사 분할 설립, 장비 옮겼더라도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판결 선고 직후 새 회사를 분할 설립하고 동산을 옮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립된 새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2073).

B주식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법원이 “원고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자, 선고 다음날 B사에서 C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했다. 그리고 B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C사로 옮겨 영업을 했다. 이에 A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회사를 분할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 회사 채무 승계돼 ‘재산 은닉’ 해당하지 않아”

임 판사는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주지법 회사대표 무죄 선고

이어 “다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며 “앞서 물품대금 소송에서의 채권이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이고 B사에서 포장공사업 등의 영업이 분할돼 C사가 설립된 이상, C사는 상법에 따라 B사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가 B사를 승계한 이상 A씨 행위가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며 “A씨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사건을 대리한 로펌에 주기로 한 성과보수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사건 위임계약 때 체결한 특약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로펌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 등 23명을 상대로 낸 수임료 조정 소송(2019가단5149224)에서 최근 “B씨 등은 A법무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자신의 조상 땅인 경기도 광주의 한 토지를 되찾겠다며 2007년 4월 A법무법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의 대리를 맡겼다. B씨는 A법무법인과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토지 매각대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고, 10년내 매각되지 않을시 지분을 이전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대리해 2008년 8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물론 B씨의 친척 등 모두 23명이 이 토지의 공유자가 됐다.

수임료는 토지 전부의 보전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

그러나 B씨 등은 승소 이후 이 땅에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을 하지 않았고, A법무법인에 약속한 보수를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 당시 정한 특약을 근거로 지난해 수임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 외의 토지 공유자들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B씨에게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다른 토지 공유자들은 B씨가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 소유권 회복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이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채무는 B씨 등 토지 공유자인 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토지 전부의 보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위임약정에 통상적으로 예상 및 이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므로, A법무법인과 맺은 위임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법무법인이 맡은 위임사무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난이도와 그 수행기간 등에 비춰볼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를 대리해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완료했다"면서 "B씨 등 토지 공유자들은 A법무법인에게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공표되지 않은 인가공증인 처벌기준은 부당” 법무부 상대 소송냈지만

공증 재인가 불허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이 법무부가 처벌기준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불이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그런 처벌기준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상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해 공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증 재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지난 2월 법무부에 공증 재인가를 요청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았다. 공증변호사 3명이 촉탁인(의뢰인)에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등 총 1300건의 사건에서 수수료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인가공증인, 수수료 감액 1000건 초과 땀 정직처분”

A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인가공증인이 수수료 감액 행위를 한 경우 1000건을 초과하면 정직 처분을 하고, 그 이하이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처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 처벌 기준은 인가공증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규명령적 성질을 가진 지침에 해당하는데도, 법무부는 사전에 처벌기준을 공지하지 않았다. 우리는 (앞서) 이런 처벌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내부기준 공표 대상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법무부가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비록 공증인징계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A법무법인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정량적 요소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는 내부적 참고자료일 뿐 법무부가 마련해두고 있는 처분기준으로서 공표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재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
로펌 패소 판결**

또 "설령 이를 처분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무부로서는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의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일률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처분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것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2항 소정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0월 1일 시행법령] 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3호, 2020. 3.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위원회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제15조제5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제31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되,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1항).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 전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2항 신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7항 신설).

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에게 보수·소득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검사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보고·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유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

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함(제67조제3항 신설, 제69조제1항제7호).

[10월 8일 시행법령]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던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1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바,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수단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추가하고, 대중교통시설에 여객터미널·선착장·접안시설·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추가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제2호라목, 제3호마목 및 제4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부문에 관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와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10월 8일 시행법령]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이 신설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4호, 2020. 4. 7.,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10월 8일 시행법령] 아동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원의 학대아동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46조).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마.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6제2항).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제2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



[10월 8일 시행]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20. 10. 8.] [2020-10-08 조례 제5150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단위구획”이란 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6. “배려주차구역”이란 「전라남도 임산부·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0. 10. 8.)

제3조(지원대상 지역)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읍·면·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5.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업 (신설 2020. 10. 8.)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개정 2020. 10. 8.)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1개 시·군에 대해 1개 사업. 다만, 다른 시·군의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주차장 관리) 관리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10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월 8일 시행]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08.] [2020-10-08 조례 제 5152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2. 가축의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보상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보상금 · 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한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금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소유자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 · 군수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심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동물방역 및 동물위생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의(獸醫) · 축산 · 의료 · 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물방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라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10. 8.)

② 협의회 위원장은 동물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0. 10.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0. 10. 8.)

1. 전라남도 동물방역 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20. 10. 8.)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신설 2020. 10. 8.)

3.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 10. 8.)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신설 2020. 10. 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20. 10. 8.)

[10월 8일 시행]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10. 08.] [2020-10-08 조례 제5140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계획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
4. 지역서점 인증 (신설 2020. 10. 8.)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8.)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 인증) (신설 2020. 10. 8.)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지역서점으로 인증(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1. 서점업 등록업체로서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신설 2020. 10. 8.)
2.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신설 2020. 10. 8.)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신설 2020. 10. 8.)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0. 8.)

제7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신설 2020. 10. 8.) 제6조에 따라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10. 8.)

1. 서점업 등록업체로서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신설 2020. 10. 8.)
2.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신설 2020. 10. 8.)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신설 2020. 10. 8.)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0. 8.)

제8조(인증절차) (신설 2020. 10. 8.) 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고, 인증서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③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0. 8.)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신설 2020. 10. 8.) ①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0. 8.)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제11조에 따른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10조(인증의 취소) (신설 2020. 10. 8.)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설 2020. 10. 8.)
2. 실태조사 결과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0. 10. 8.)
2. 실태조사 결과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0. 10. 8.)

제11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개정 2020. 10. 8.)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는 전라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지역서점 인증, 인증기간 연장, 인증 취소 (신설 2020. 10. 8.)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0. 8.)

제12조(구성) (개정 2020. 10. 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산업진흥 및 출판유통사업 담당 부서장
 2.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 10. 8.)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개정 2020. 10.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신설 2020. 10. 8.)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인증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16조(업무의 위탁) (개정 2020. 10. 8.)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포상) (개정 2020. 10. 8.)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개정 2020. 10.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솔로몬의 재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산정에 반영되나요?



나공무는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방청이 나공무의 초임 호봉을 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나공무는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확정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은 호봉 재확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나공무 : 1일 근무시간은 적지만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제 경력도 호봉산정에 반영 되어 해요.
2. 지방청 :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나공무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공무의 신청은 받아 줄 수 없습니다.

☞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나공무: 1일 근무시간은 적지만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제 경력도 호봉산정에 반영 돼야 해요. 입니다.

해당 사안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근’이라는 개념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 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2. 나. 7)]에서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경우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하고, 비동일분야 경력은 80% 인정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하면서도,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 ①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 ②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③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인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0. 3. 1. 노동부훈령 제733호로 제정된 것)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을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④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를 풀타임(Full-time) 근무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등)에 배치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지방청은 나공무의 신청을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